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및 의무경찰제도 폐지에 따른 보안산업 변화에 대한 인식

왕 석 원* · 최 연 준**

〈요 약〉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간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 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종’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의무경찰제도 폐지, 보안산업 변화, 청원경찰, 학과 교육과정

* 여주대학교 스포츠·경호과 교수 (제1저자)

** 경기대학교 시큐리티매니지먼트전공 외래강사 (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 론

I. 서 론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약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 공항 등 대부분의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업무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업체가 일정기간 계약을 통해 도급의 형태로 담당해 왔으나, 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존 도급의 형태에서 자체 고용 또는 자회사 설립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해 온 보안업체들은 폐업까지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이들 업체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들은 신분과 고용불안 그리고 기존 직원과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비교적 고액의 임금과 고용 승계 등으로 안정된 일자리로 인정되어 왔으며, 업무의 특성상 젊은 인력이 요구되는 업종으로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도 비교적 인기가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 변화와 함께 국방부에서는 현역병의 지원감소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2023년 의무경찰과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방부 관

계지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인구가 2020년부터 급감하기 때문에 연간 28,000여명을 선발하는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현역으로 전환하여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의 단계적 감축 계획에 따라 의무경찰제도가 2023년에 완전히 없어질 예정이다(김상균, 2018). 따라서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 및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의무경찰들이 기존에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보안인력 마련도 시급한 현실이다.

이로 인해 최근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인천공항 등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각 기관에 적합한 안을 각각 마련하고 있어 아직 통일된 제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연구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현재 특수경비원과 의무경찰을 대체하여 어떠한 종류의 인력이 보안업무를 담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대체 인력으로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직무권한에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직무 범위 내에서 경찰의 권한을 대부분 행사할 수 있는 청원경찰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김문귀·이주락, 201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고용의 안정과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옳다고 볼 때, 이러한 정부 정책들의 변화에 따라 특수경비업체를 비롯한 보안산업의 변화와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공약에서 간접고용 포함 등을 통해 전환규모 대폭 확대 계획을 밝혔고, 출범 후 2017년 5월 12일에는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 공식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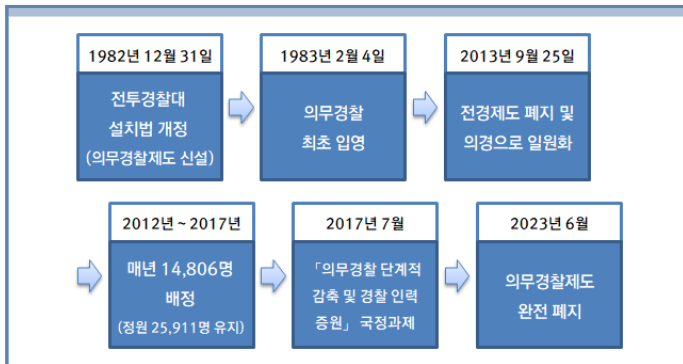
사로 인천국제공항에 방문하여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 것을 선언하였다. 이후 7월 20일에 전환 대상, 기준, 추진체계 등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발표, 10월 26일에 기관별 특별 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12월 28일에 정규직 전환자 관리규정 개정안 발표, 2018년 1월에 5개 주요 전환직종의 표준임금 체계 발표를 실시하였다(황선웅, 2018).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여 전환정책을 지난 2년간 추진해 왔다. 2019년 6월 말 기준 18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 되었으며, 이는 전환 계획의 90.1%에 해당한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된 185,000명 중 157,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전환결정 인원과 전환완료 인원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계약 만료 시점에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 기본적 처우개선, 정규직 고용관행도 확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에 대한 부분도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개선하고,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2. 의무경찰제도 폐지

의무경찰이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병역대상자 중 경찰청장이 선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전환복무 된 자를 말하며, 대간첩 작전임무수행, 방범순찰, 집회시위관리, 교통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의무경찰제도의 기원은 ‘전투경찰순경제도’이며, 1967년 9월 1일 대통령령 2,665호 전경 운용 제하에 의거하여 후방지역 대간첩 작전 임무 수행 및 치안 유지를 위해 전투경찰대를 창설하였으며, 1970년 12월 31일 현역병 중에서 전투경찰대원을 선발하는 내용을 담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제정하였다. 1970년 12월 22일 사회 혼란과 경찰 임무 증가로 인해 전투경찰순경의 임무에 치안업무 보조 임무를 추가하였으며, 1982년 12월 31일 전투경찰대 설치법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8만5천명, 90.1%(1단계) 달성,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608&call_from=rsslink, (검색일자: 2019. 9. 1).

개정을 통해 전투경찰을 국방부에서 배정하는 작전전경과 경찰청에서 선발하는 의무경찰로 구분하여 의무경찰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의무경찰은 1983년 2월 4일 최초로 입영하였으며, 2013년 9월 25일 전경제도가 폐지되어 의경으로 일원화되었다(양윤정, 2014).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4,806명을 배정하여 정원 25,911명을 유지해오다가 2017년 7월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이 국정과제로 확정되어 2018년부터 5년에 걸친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전환복무요원제도 중 하나인 의무경찰 제도는 2018년 12월 기준 19,495명으로 경찰인력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방호, 시위진압업무 등 다양한 치안업무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경찰청, 2019). 하지만 의무경찰 제도 폐지로 인해 경찰청에서는 2017년부터 26,000명의 의경을 5년간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줄여 2023년 6월에 완전히 폐지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의경 선발 인원도 2021년 2,094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발하지 않을 계획이다²⁾. 경찰청에 따르면 의무경찰 전체 정원은 2018년 19,495명, 2019년 14,192명, 2020년 8,976명, 2021년 4,152명, 2022년 1,045명으로 축소된다. 계속되는 인원 감소에 따라 현재 의경 복무자들의 업무량 증가와 추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³⁾.



출처: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⁴⁾

〈그림 1〉 의무경찰제도 연혁

- 2) 보안뉴스, 의경 없어진다는데... 국가중요시설 보안·안전 누가 책임지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8855>. (검색일자: 2019. 7. 11).
- 3) 고대신문, 사라지는 의경제도, 업무 부담 늘어나는 현역 의경,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0>. (검색일자: 2019. 9. 17).
- 4)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https://ap.police.go.kr/ap/main/contents.do?menuNo=200003>. (검색일자: 2019. 8. 19).

3. 대체인력 비교분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른 보안업무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방호직공무원)에 대해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 등에 대하여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근거를 비교해보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서,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방호원의 경우 각 부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관리감독의 경우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은 관할지방경찰청장 및 관할경찰서장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나, 방호원은 각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둘째, 고용형태를 비교해보면 청원경찰은 직접 고용하지만 특수경비원은 경비업체와의 근로계약을 통한 간접고용이며, 방호원은 공무원 채용을 통해 고용한다. 임금의 경우 청원경찰과 방호원은 호봉제에 따라 지급이 되지만, 특수경비원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경비업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셋째,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을 비교해보

〈표 1〉 대체인력 비교분석

구분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
법적 근거	· 청원경찰법	· 경비업법	· 각 부처 직제 및 직제 시행 규칙
관리 감독	· 관할지방경찰청장 · 관할경찰서장	· 경찰청장 · 관할지방경찰청장 · 관할경찰관서장	· 각 부처
고용 형태	· 직접고용	· 간접고용(경비업체와의 근로계약)	· 공무원 채용(공개 및 경력 채용)
임금	· 호봉제(경찰청장 매년 고시)	· 경비업체별 상이	· 공무원 호봉제
직무 범위	▶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수행 (권한 上)	▶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 수행 -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권한 中)	▶ 청사방호를 위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 행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력행사 가능 (권한 下)
직무 권한	①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 발생방지, 범죄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② 무기휴대 권(권총, 소총) ③ 장비사용권한 - 분사기, 경찰봉, 포승	① 무기휴대 권(권총, 소총) ② 장비사용권한 -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	· 권한 없음

출처: 신형석(2018) 재구성.

면 청원경찰은 직무범위 내에서 불심검문 등 직접적인 권한 행사가 가능하며, 권총 등 무기휴대권한과 장비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수경비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위협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권총 등 무기휴대권한과 장비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방호원은 청사방호를 위한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과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력행사가 가능하며, 무기 및 장비 사용에 대한 권한도 없으므로 직무수행에 일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권한을 상, 중, 하로 구분하면 청원경찰이 가장 많은 권한, 특수경비원이 중간 권한, 방호원이 가장 적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노진거 외, 2018; 신형석, 2018; 공배완, 2010)⁵⁾.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9년 9월 25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보안산업 변화에 대한 설문 응답한 인원은 총 23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
성별	남자	167(71.4)
	여자	67(28.6)
학년	1학년	115(49.1)
	2학년	70(29.9)
	3학년	35(15.0)
	4학년	14(6.0)
학교 유형	2년제 전문대학	133(56.8)
	4년제 대학교	101(43.2)

5) 보인뉴스, 의경 없어진다는데... 국가중요시설 보안·안전 누가 책임지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8855>. (검색일자: 2019. 7. 11).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보안산업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크게 인구사회학적특성 3문항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보안산업 변화에 대한 인식과 향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대한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른 보안산업 변화, 청원경찰의 채용과정·담당업무·급여 수준에 대한 내용들을 설문지 내에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Likert 5점 척도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일부 문항에서는 최대 3개까지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위해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도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학년, 학교 유형으로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보안산업 변화에 대한 인식과 향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견, 기존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의견, 기존 의무경찰 담당 업무를 청원경찰이 대체하는 것에 대한 의견, 현재 청원경찰의 채용과정 적합성에 대한 의견, 현재 청원경찰의 담당업무 적합성에 대한 의견, 청원경찰의 직업 안정성에 대한 의견, 청원경찰의 현 급여 수준 적당성에 대한 의견, 청원경찰 취업 의사에 대한 의견,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 청원경찰이 되기 위한 과목 반영 여부에 대한 의견,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요소)에 대한 의견,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증에 대한 의견,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 학교에서 꼭 배워야 할 과목에 대한 의견으로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문헌연구와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파악된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보안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의 검토를 받아 지적 사항을 수정 및 반영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이후 각 대학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의 목적 및 문항에 대해 설명한 이후 질문 내용에 응답자가 직접 응답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 및 데이터 클리닝과정을 거친 후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보안산업 변화에 대한 인식과 향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문항별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가 4명(1.7%), ‘동의하지 않는다’가 11명(4.7%), ‘보통이다’가 104명(44.5%), ‘동의한다’가 82명(35.0%), ‘매우 동의한다’가 33명(14.1%)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의하는 응답자가 49.1%,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6.4%로 나타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4	1.7
2	동의하지 않는다	11	4.7
3	보통이다	104	44.5
4	동의한다	82	35.0
5	매우 동의한다	33	14.1
	합계	234	100.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존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던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가 3명(1.3%), ‘동의하지 않는다’가 17명(7.2%), ‘보통이다’가 103명(44.0%), ‘동의한다’가 90명(38.5%), ‘매우 동의한다’가 21명(9.0%)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의하는 응답자가 47.5%,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8.5%로 나타나 기존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던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들이 전

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기존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3	1.3
2	동의하지 않는다	17	7.2
3	보통이다	103	44.0
4	동의한다	90	38.5
5	매우 동의한다	21	9.0
	합계	234	100.0

의무경찰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 등을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가 10명(4.3%), ‘동의하지 않는다’가 18명(7.7%), ‘보통이다’가 100명(42.7%), ‘동의한다’가 88명(37.6%), ‘매우 동의한다’가 18명(7.7%)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의하는 응답자가 45.3%,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12.0%로 나타나 기존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던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기존 의무경찰 담당업무를 청원경찰이 대체하는 것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0	4.3
2	동의하지 않는다	18	7.7
3	보통이다	100	42.7
4	동의한다	88	37.6
5	매우 동의한다	18	7.7
	합계	234	100.0

현재 청원경찰의 채용과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가 4명(1.7%), ‘그렇지 않다’가 10명(4.3%), ‘보통이다’가 85명(36.3%), ‘그렇다’가 101명(43.2%), ‘매우 그렇다’가 34명(14.5%)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합

하다는 응답자가 57.7%,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6.0%로 나타나 현재 청원경찰의 채용과정 적합성에 대해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현재 청원경찰의 채용과정 적합성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전혀 그렇지 않다	4	1.7
2	그렇지 않다	10	4.3
3	보통이다	85	36.3
4	그렇다	101	43.2
5	매우 그렇다	34	14.5
	합계	234	100.0

현재 청원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적합한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가 2명(0.9%), ‘그렇지 않다’가 5명(2.1%), ‘보통이다’가 104명(44.4%), ‘그렇다’가 97명(41.5%), ‘매우 그렇다’가 26명(11.1%)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합하다는 응답자가 52.6%,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3.0%로 나타나 현재 청원경찰의 담당업무 적합성에 대해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현재 청원경찰의 담당업무 적합성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전혀 그렇지 않다	2	0.9
2	그렇지 않다	5	2.1
3	보통이다	104	44.4
4	그렇다	97	41.5
5	매우 그렇다	26	11.1
	합계	234	100.0

청원경찰의 직업 안정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가 5명(2.1%), ‘그렇지 않다’가 28명(12.0%), ‘보통이다’가 106명(45.3%), ‘그렇다’

가 73명(31.2%), ‘매우 그렇다’가 22명(9.4%)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라는 응답자가 40.6%, 안정적이지 않다는 응답자가 14.1%로 나타나 청원경찰의 직업 안정성에 대해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청원경찰의 직업 안정성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전혀 그렇지 않다	5	2.1
2	그렇지 않다	28	12.0
3	보통이다	106	45.3
4	그렇다	73	31.2
5	매우 그렇다	22	9.4
	합계	234	100.0

청원경찰의 현 급여 수준이 적당한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가 12명(5.1%), ‘그렇지 않다’가 56명(24.0%), ‘보통이다’가 103명(44.0%), ‘그렇다’가 49명(20.9%), ‘매우 그렇다’가 14명(6.0%)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당하다는 응답자가 26.9%,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29.1%로 나타나 청원경찰의 현 급여 수준 적당성에 대해 적당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약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청원경찰의 현 급여 수준 적당성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전혀 그렇지 않다	12	5.1
2	그렇지 않다	56	24.0
3	보통이다	103	44.0
4	그렇다	49	20.9
5	매우 그렇다	14	6.0
	합계	234	100.0

청원경찰로 취업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가 20명(8.5%), ‘그렇지 않다’가 32명(13.7%), ‘보통이다’가 109명(46.6%), ‘그렇다’가 60명

(25.6%), ‘매우 그렇다’가 13명(5.6%)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업 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31.2%, 취업 의사가 없는 응답자가 22.2%로 나타나 청원경찰 취업 의사에 대해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취업할 생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청원경찰 취업 의사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전혀 그렇지 않다	20	8.5
2	그렇지 않다	32	13.7
3	보통이다	109	46.6
4	그렇다	60	25.6
5	매우 그렇다	13	5.6
	합계	234	100.0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 청원경찰이 되기 위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가 12명(5.1%), ‘그렇지 않다’가 33명(12.0%), ‘보통이다’가 115명(49.1%), ‘그렇다’가 61명(26.1%), ‘매우 그렇다’가 13명(5.6%)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31.7%,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19.2%로 나타나 교육과정에 청원경찰이 되기 위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교육과정에 청원경찰이 되기 위한 과목 반영 여부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전혀 그렇지 않다	12	5.1
2	그렇지 않다	33	14.1
3	보통이다	115	49.1
4	그렇다	61	26.1
5	매우 그렇다	13	5.6
	합계	234	100.0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요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최대 3개까지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문한 결과, ‘위급상황대처능력’이 143명(22.3%)으로 가장 높았으며, ‘무도능력’ 129명(20.1%), ‘책임감’ 75명(11.7%), ‘인성’ 70명(11.0%), ‘이론적지식(법규 등)’ 57명(8.9%), ‘서비스마인드’ 36명(5.6%), ‘사명감’ 32명(5.0%), ‘보안실무경력’ 32명(5.0%), ‘자기방어능력’ 28명(4.4%), ‘체력’ 24명(3.7%), ‘외국어능력’ 15명(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요소)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무도능력	129	20.1	7	사명감	32	5.0
2	이론적지식(법규 등)	57	8.9	8	보안실무경력	32	5.0
3	위급상황대처능력	143	22.3	9	외국어능력	15	2.3
4	서비스마인드	36	5.6	10	체력	24	3.7
5	인성	70	11.0	11	자기방어능력	28	4.4
6	책임감	75	11.7				
합계				641 (100.0)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자격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최대 3개까지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문한 결과, ‘무도 단증’이 158명(28.4%)으로 가장 높았으며,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140명(25.2%), ‘경비지도사’ 113명(20.3%), ‘신변보호사’ 72명(12.9%), ‘운전면허증’ 40명(7.1%), ‘외국어(어학)’ 21명(3.8%), ‘컴퓨터활용’ 13명(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증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무도 단증	158	28.4	5	컴퓨터활용	13	2.3
2	경비지도사	113	20.3	6	운전면허증	40	7.1
3	신변보호사	72	12.9	7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140	25.2
4	외국어(어학)	21	3.8				
합계				557 (100.0)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 학교에서 꼭 배워야할 과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최대 3개까지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문한 결과, ‘무도실기’가 113명(29.1%)으로 가장 높았으며, ‘청원경찰법’ 102명(17.3%),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97명(16.5%), ‘경찰학개론’ 57명(9.7%), ‘경비업법’ 39명(6.6%), ‘보안현장실습’ 39명(6.6%), ‘경호학’ 29명(5.0%), ‘민간경비론’ 24명(4.1%), ‘보안장비활용’ 23명(4.0%), ‘사격술’ 16명(2.7%), ‘범죄학’ 14명(2.4%), ‘형사소송법’ 13명(2.2%), ‘외국어(어학)’ 12명(2.0%), ‘위기관리론’ 11명(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 학교에서 꼭 배워야할 과목에 대한 의견

연번	항목	빈도	비율	연번	항목	빈도	비율
1	무도실기	113	19.1	8	위기관리론	11	1.8
2	청원경찰법	102	17.3	9	외국어(어학)	12	2.0
3	민간경비론	24	4.1	10	보안현장실습	39	6.6
4	경비업법	39	6.6	11	범죄학	14	2.4
5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97	16.5	12	경호학	29	5.0
6	경찰학개론	57	9.7	13	형사소송법	13	2.2
7	사격술	16	2.7	14	보안장비활용	23	4.0
합계				589 (100.0)			

V. 결론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특수경비업체를 비롯한 보안산업의 변화와 의무경찰 제도 폐지로 인해 기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인천공항 등의 보안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의무경찰제도 폐지, 대체인력(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보안산업 변화에 대한 인식과 향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보안산업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수도권 대학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자가 49.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던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에 47.5%가 동의하고 있으며,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청원경찰이 대체하는 것에 45.3%가 동의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 변화에 따라 향후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인천공항 등의 국가중요시설 보안업무는 대체인력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 등을 고려해볼 때 청원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최우호, 2019; 김문귀·이주락, 2019). 현재 청원경찰의 채용과정에 대해서는 57.7%가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청원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52.6%가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에 따라 채용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류전형, 체력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과정을 진행하며, 채용 후 담당하는 업무는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청사 출입 차량 및 인원 통제, 순찰업무 등을 실시한다. 청원경찰의 직업 안정성에 대해서는 40.6%가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의 현 급여 수준의 적당성에 대해서는 29.1%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청원경찰의 급여 수준이 현재보다는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 청원경찰 취업 의사에 대해서는 31.2%가 취업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 청원경찰이 되기 위한 과목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31.7%가 반영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요소)에 대해서는 위급상황대처능력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무도능력이 20.1%, 인성·책임감·사명감 요소를 합치면 27.7%로 나타났으므로 위급상황대처능력, 무도능력, 인성·책임감·사명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증에 대해서는 무도 단증이 28.4%로 가장 높았으며,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25.2%, 경비지도사 20.3%, 신변보호사 12.9%로 나타났으므로 무도,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과목과 더불어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자격 시험 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 학교에서 꼭 배워야할 과목에 대해서는 무도실기 19.1%, 청원경찰법 17.3%,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16.5%의 순으로 나타났으므로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 배워야할 과

목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을 교육과정에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할 인력의 제안이 필요함에 따라 청원경찰·특수경비원·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을 비교 분석하고,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적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위급상황 대처능력’과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경찰청 (2019). 의무경찰 감축·폐지 및 대체경찰관 충원 종합계획.
- 공배완 (2010). 민간경비의 직무에 관한 청원경찰법상 제도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제도의 비교 연구. *법학연구*, 38, 325-347.
- 김문귀, 이주락 (2019). 경찰관서에서의 청원경찰 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경찰연구*, 18(2), 59-80.
- 김상균 (2018). 전 의경 폐지에 따른 경찰인력 운용방안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3), 1-22.
- 노진거, 이영호, 최경철 (2018). 경비업법과 청원경찰의 비교 연구: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시큐리티연구*, 57, 177-203.
- 신형석 (2018).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체계 개편 방안. *시큐리티연구*, 57, 9-26.
- 양윤정 (2014). 의무경찰의 부대생활 스트레스와 부대적응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우호 (2019). 국회 외곽 경호·경비시스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60, 113-135.
- 황선웅 (2018). 문재인 정부 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평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산업노동연구*, 24(2), 29-59.

2. 기타자료

- 고대신문, 사라지는 의경제도, 업무 부담 늘어나는 현역 의경.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0> (검색일자: 2019.9.17).
-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https://ap.police.go.kr/ap/main/contents.do?menuNo=200003> (검색일자: 2019.8.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8만5천명, 90.1%(1단계) 달성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608&call_from=rsslink
(검색일자: 2019. 9. 1).
- 보안뉴스, 의경 없어진다는데... 국가중요시설 보안·안전 누가 책임지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8855>. (검색일자: 2019. 7. 11).

【Abstract】

**Perceptions of the Security Management at
Critical Facilities in South Korea: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increasing demand
for security personnel and the alternatives to
police**

Wang, Sug-Won · Choi, Yeon-Jun

With the government policy on converting contract workers to full-time employee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about the security personnel at the nation's critical facilitie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and airports. Moreover, the scheduled disbandment of the conscripted police force in 2023 has raised concerns about security management at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To examine th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the possible alternatives to fill the expected security gap, 234 undergraduate students of security management and protec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were surveyed. Particularly,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legal bases and supervision, the employment types and salaries, and the scopes of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f suggested alternatives were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utilization of private police forces was thought to be the most effective option.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university departments should develop and maintain a quality curriculum to educate their students to be prepared security professionals with a focus on emergency response capabilities and martial arts, including the courses on private police law and emergency rescue an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Keywords: Conversion to Full-time Employee, Disbandment of the
Conscripted Police Force, Security Industry, Private Police,
Department Curriculum